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5월 3일
○ 제출일자 : 2011년 5월 4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취득(교환)

(단위 : ㎡, 천원)

기 관 명	구 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토 지	(가칭) 대소금왕고 설립부지 취득	21,874	1,502,819	
	토 지	충북체육고 이전부지 취득	471,003	8,800,000	사유지
			247,653	2,770,124	국유지
	건 물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3,108	6,031,200	
	건 물	진천생명과학고 기숙사 신축	2,170	3,977,400	
청주교육지원청	건 물	수곡중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2,148	3,937,120	
	건 물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1,090	3,109,364	

기 관 명	구 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비 고
제천교육지원청	건 물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1,824	3,857,000	
	건 물	내토중 다목적교실 신축	1,074	3,208,000	
진천교육지원청	토 지	(가칭) 석장초 설립부지 취득	14,400	840,000	
	건 물	(가칭) 석창초 교사 신축	9,498	4,379,000	
합 계		**(10건)**	**775,842**	**42,412,027**	

1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 예정일자 : 2014. 3. 1.

○ 설립위치 :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 설립부지 : 21,874㎡(군유지 2필지 15,319㎡, 추정금액 678,192천원)

○ 추정금액 : 1,502,819천원

○ 매입방법 : 사유지는 매입, 군유지는 유휴 공유재산(임야)과 교환

○ 사 유 :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 취득

2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취득(교환)

○ 예정일자 : 2014. 3. 1.

○ 이전위치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

○ 총취득부지 : 718,656㎡[사유지 471,003㎡(55필지), 국유지 247,653㎡(5필지)]

○ 추정금액 : 11,570,124천원(사유지 : 8,800,000천원, 국유지 : 2,770,124천원)

○ 매입방법

- 국유지 : 유휴 공유재산(임야)과 교환 및 관리환 추진
- 사유지 : 감정평가 금액에 의거 매입

○ 사 유 : 체육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동장, 체육관, 산악트레킹코스 등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최적 훈련공간 제공

3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 신축위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28

○ 신축면적 : 3,108㎡

- 교사 : 990㎡ / 기숙사 : 1,370㎡ / 골프연습장 : 748㎡

○ 신축금액 : 6,031,200천원

- 교사 : 1,192,200천원 / 기숙사 : 2,740,000천원 / 골프연습장 2,099,000천원

○ 사　　유 : 골프과 신설 및 전국단위 모집과 오지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교사와 기숙사 및 골프과 신설에 따른 골프연습장 신축

4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신축위치 :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

○ 신축면적 : 2,170㎡

○ 신축금액 : 3,977,400천원

○ 사　　유 : 바이오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학생 기숙사 신축

5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 증축위치 : 청주시 수곡2동 1003

○ 증축면적 : 2,148㎡

○ 증축금액 : 3,937,120천원

○ 사　　유 : 급식시설 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6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 예정일자 : 2012. 3. 1.

○ 증축위치 : 청주시 사창동 351

○ 증축면적 : 1,090㎡

○ 증축금액 : 3,109,364천원

○ 사　　유 :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7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 신축위치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1

○ 증축면적 : 1,824㎡

○ 증축금액 : 3,857,000천원

○ 사　　유 : 각종 교육활동 및 학교운동부(하키부) 훈련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8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신축위치 : 제천시 장락동 687-1

○ 증축면적 : 1,074㎡

○ 증축금액 : 3,208,000천원

○ 사　　유 :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9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 예정일자 : 2014. 3. 1.

○ 설립위치 :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

○ 설립면적

- 부지 : 14,400㎡
- 건물 : 9,498㎡

○ 추정금액 : 5,219,000천원(부지 840,000천원, 건물 4,379,000천원)

○ 사　　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 및 교사 취득

❒ 처분(교환)

(단위 : ㎡,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토 지	노은초 유휴 임야 교환 처분	1,319,107	2,770,124	
음성교육지원청	토 지	청룡초 유휴 임야 교환 처분	12,397	446,292	
합 계		**(2건)**	**1,331,504**	**3,216,416**	

1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처분

○ **재산현황**

- **교육감 재산(교환처분)**
  - 재산위치 :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26

▪ 교환면적 : 1,319,107㎡

▪ 추정금액 : 2,770,124천원

- **국유재산(산림청, 교환취득)**

▪ 재산위치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105번지 외 2필지

▪ 교환면적 : 234,701㎡

▪ 추정금액 : 2,770,124천원

○ 교환방법 :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면적을 가감하여 교환

○ 사 유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이전예정 부지내 국유지와 유휴 공유재산(임야)을 교환하여 토지매입 예산절감

2 청룡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처분

○ 재산현황

- **교육감 재산(교환처분)**

▪ 재산위치 :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산 31-9

▪ 교환면적 : 12,397㎡

▪ 추정금액 : 446,292천원

- **음성군 재산**

▪ 재산위치 :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26-1번지 외 1필지

▪ 교환면적 : 15,319㎡

▪ 추정금액 : 678,192천원

○ 교환방법 :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하되, 교환차금 발생시는 현금으로 보전

○ 사 유 :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내 음성군 소유 군유지와 유휴 공유재산(임야)과 교환하여 토지매입 예산절감

5. 검토의견

▢ 대소금왕고 설립부지 취득

○ (가칭) 대소금왕고 설립부지는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군유지 2필지 15,319㎡(추정금액 678,192천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교육감소관의 공유재산과 교환하고, 사유지 6,555㎡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소금왕고 설립부지 취득과 관계된 타당한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501,819천원

▢ 충북체육고 이전부지 취득(교환)

○ 충북체육고 이전부지는 체육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동장, 체육관, 산악트레킹코스 등을 고려하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에 총 718,656㎡을 확보할 계획이며,

○ 이중 국유지 247,653㎡는 교육감소관의 공유재산과 교환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사유지 471,003㎡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체육고 이전 계획과 관련한 적정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3,880,800천원

▢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은 골프과 신설과 전국단위 학생모집에 따른 학생 수용 및 오지 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6,521,000천원

○ 산업수요에 맞춰 학과 개편 및 인재양성교육과정 운영에는 다른 견해가 없으나 시설비의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심사 여부, 학과개편계획에 대한 설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부합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천생명과학고 기숙사 신축**

○ 진천생명과학고는 2012. 3. 1. 마이스터고(현 산업수요맞춤형고)로 전환되어 향후 전교생(예정인원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2,170㎡ 부지에 30실(12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 마이스터고 설립취지와 전국단위 학생모집(전체 인원 40%)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3,977,400천원

□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은 현재 1~4층 교실로 운반 급식하는 급식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활동, 수준별 맞춤형 수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 부지 내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2,511,650천원

※ 청주시 지원 522,000천원

○ 학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운동장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장이 작아지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동 시설의 증축을 바라는 숙원사업이고, 교육활동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생략

□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은 각종 교육활동 및 학교운동부(하키부)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3,907,000천원

※ 제천시 지원 421,000천원

▢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은 32억 8백만원을 들여 1,074㎡ 면적에 강당겸 체육관, 교사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장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3,208,000천원

※ 제천시 지원 600,000천원

▢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생략

【처분(교환)】

▢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처분**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재산인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26번지 1,319,107㎡ 과 산림청 국유지 234,701㎡ 추정금액 각각 2,770,124천원을 교환하되,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면적을 가감하여 교환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청룡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처분**

(가칭)대소고등학교 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재산인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산 31-9번지 12,397㎡ 추정금액 446,292천원과 음성군 재산 15,319㎡ 추정금액 678,192천원을 교환하되, 상호감정평가에 따라 교환차금 발생시는 현금으로 보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휴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